

2021년도 제125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

I. 회의 개요

- 일 시: 2021. 5. 26.(수요일), 10:30
- 장 소: 한국저작권보호원 회의실
- 참석자: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3분과위원회 위원 3명 참석
 - 심의위원: 최승수(분과위원장), 노정동, 박성호 위원
-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

1. 개회선언 및 인사말씀 분과위원장

2. 안건상정 분과위원장

〈의결안건〉 ※ 안건 검토 보고: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강나래 전문위원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3. 폐회선언 분과위원장

II. 회의내용 및 결과

1. 의결안건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 주요내용: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1,228건(안건번호 제2021-56499호~56946호)
 - 회의결과: 안건번호 제2021-56499호(순번 1번)는 웹사이트에서 노래 반주곡을 이용하고 있는 사안으로, 권리자의 이용허락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설사 이용허락이 없었다 하여도 공정이용에 해당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점,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희박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시정권고의 대상으로 적절하지 아니하므로 부결함.
안건번호 제2021-56500호~56512호(순번 2번~14번)는 웹하드 사이트에서 만화 불법복제물을 제공한 사안으로,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고 판단되어 가결함.
안건번호 제2021-56956호(순번 448번)는 보호원의 시스템 오류로 인해 순번 4중복으로 심의 요청된 것으로 부결함.
- 그 외에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는 심의안건 게시물 1,212건은 삭제 또는 전송 중단의 시정을 권고하고 복제·전송자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Ⅲ. 회의 의사록

1. 개회선언

- 최승수 분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1년 제125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개회를 선언함.

2. 안전상정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 강나래 전문위원: 심의위원들께서는 PC에 접속하여 금일 심의안건의 저작물명, 저작권자,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등 목록을 직접 확인해 주시고, 저작권법 시행령 제67조의4 및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규정 제11조에 따른 제척 사유 해당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B, A, C 위원: 해당 없음.

- 최승수 분과위원장: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강나래 전문위원: 금일 심의안건은 28개 온라인서비스 이용자들이 게시한 1,228건의 복제물에 대한 시정권고 심의임. 관련 법령과 심의 기준은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특히 법리에 관해서는 검토보고서의 하급심 판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1번은 익명의 민원인이 신고한 건임. 실시간 인터넷 방송 사이트인 '※※△'에서 해당

사이트 운영자로 추정되는 '※△※△'가 대중가요 '※△△※△※△※△' 등 노래 반주곡 음원을 재생한 후, 그에 맞추어 색소폰 실연 영상을 실시간으로 방송하고 VOD로 제공한 사안임. 총 1개 게시물임. (심의대상 게시물에 직접 접속하여 보여주면서)게시자 아이디 옆에 '(Admin)'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게시자는 해당 사이트의 운영자로서, 단독으로 업로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영상을 재생하여 보여주면서)심의대상 게시물에서 제공하는 영상의 전체 분량은 1시간 46분 22초이며, 해당 영상은 노래 반주곡에 맞추어 악기를 연주하는 모습 약 1시간 13분 24초와, 게시자가 혼자 이야기를 하거나 실시간으로 구독자와 대화하는 모습 약 32초 58초로 구성되어 있음. 심의대상 게시물 내 노래 반주곡 재생 목록과 가수명, 음원 재생 구간 등을 표로 정리하여 검토보고서에 정리해 두었음.

해당 사이트에서 실시간 방송 및 VOD를 시청하기 위해서는 '※△※ △※'를 구매하여야 하며, 심의대상 게시물은 약 330원에 구매하여 시청 가능함. 심의대상 게시물은 총 16개 대중가요의 노래 반주곡을 이용하고 있으며, 영상 하단의 설명에 따르면 '※△※ △※△'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보여주면서)'※△※ △※△'는 '※△※△※△※△※△'에서 제작 및 판매 중인 제품으로, 내장된 노래 반주곡 파일 또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하여 다운로드한 노래 반주곡 파일을 내장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재생할 수 있도록 하는 미디프로세서임. 주로 실연자들이 공연 목적으로 사용함.

먼저, 침해되는 저작권에 대하여 살펴보겠음. 위 노래 반주곡은 '※△※△※△※△※△'이 직접 제작하여 제공 중인 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업체의 2차적저작물로서 원저작물과 별도의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고 할 것임. 게시자가 위 기기를 통하여 제공되

는 노래 반주곡을 적법하게 이용하기 위하여서는, 저작권자인 ‘※△※△※△※△’에 대한 이용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할 것임. 다만 이 경우에도 원저작물 권리자의 이용허락을 받아야 함.

게시자는 대중가요의 노래 반주곡을 실시간 방송 및 VOD 제공의 방법으로 이용하고 있는 바, ‘※△※△※△※△’의 독자적 저작물로서 노래 반주곡에 대한 공중송신권(방송 및 전송) 및 각 노래 반주곡 원저작물의 저작권자의 2차적저작물 이용권의 침해 여부가 문제됨.

이용허락 여부에 대하여 심의위원회 심의가 대심제(對審制)가 아닌 관계로 당사자 의견 청취를 통한 사실관계 확인은 불가능하나, 심의 대상 게시물을 제공 중인 ‘△※△’ 사이트 하단의 ‘방송기준안내’ 및 ‘저작권 안내’ 항목에서 저작권법 준수를 안내하면서 ‘저작권 및 권리 침해 방송’을 금지하는 점에 비추어 보아 해당 사이트의 운영자인 게시자는 저작권법을 이해하고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방송을 진행하고 있을 것으로 추측됨. 종합하면, 게시자가 이용허락을 받았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므로 게시자의 저작권법 침해 여부가 불명확하다고 할 것임.

다음으로 저작재산권 제한 사유 해당 여부에 대해서 살펴보겠음. 만약 게시자가 저작권법을 침해하였다고 가정하여도, 저작권법 제35조의5에서 정하는 공정이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동조 제2항 각 호에 따라 판단할 때, 심의대상 게시물의 영상은 실연할 목적으로 총 16개의 노래 반주곡 음원을 이용하고 있으며, 실시간 방송을 통하여 후원금을 모으거나 VOD를 유료 제공한다는 점에서 영리적 목적이 인정됨. 또한, 각 노래 반주곡 음원의 전체 분량을 이용 중인 사실 역시 인정됨. 다만, 노래 반주곡은 이용자들이 각자 본인이 실연할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해당 영상의 노래 반주곡은 게시자의 실

연이 더해져 있어 이용자들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므로 시장 대체 가능성이 매우 낮음. 나아가 실연된 음악 자체에 대한 시장 대체 가능성까지 살핀다 하여도, 연주 수준이나 녹음 상태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악곡의 실연 음악저작물에 대한 수요를 대체할 가능성도 없음. 따라서 합법 시장의 저작물의 가치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희박함.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심의대상 게시물의 노래 반주곡 이용이 공정이용에 해당한다고 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게시자가 권리자로부터 저작물에 대한 이용허락을 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설사 이용허락이 없었다 하여도 공정이용에 해당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권리관계 및 저작권법 위반 여부가 불확실하여 권리자가 직접 민·형사상 조치를 하는 것이 보다 적절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시정권고의 대상으로 적절하지 아니하므로 부결 의견으로 검토하였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
- C 위원: 반주곡 음원은 음악저작물의 2차적저작물이기도 하지만, 음반으로서 저작인접물의 성격도 있음. 추정컨대, 노래 반주기기 회사인 '※△※△※△※△※△'은 반주곡 음원을 제작할 때 음악의 저작권자로부터 이용허락을 얻었을 것으로 보임. 따라서 '※△※△※△※△※△'은 2차적저작물에 대한 권리 및 음반제작자로서의 저작인접권자의 권리를 모두 가지는 자로 보아야 함. 음반제작자로서의 권리에 대한 검토를 보충할 필요성이 있음.

- B 위원: 원 음악저작물에 대하여 편곡이 이루어지면 2차적저작물이 되고, 이러한 2차적저작물을 그대로 실연하여 녹음한 노래 반주곡 음원은 저작권법상 음반이 됨. 따라서 사안의 경우, 원저작물의 저작권자의 권리, 2차적저작물에 대하여 독자적인 권리를 가지는 2차적저작물 작성자의 권리, 2차적저작물을 실연 및 녹음하여 음반을 제작한 음반제작자의 저작인접권까지 총 3개의 권리에 대한 침해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음. 여기에서 2차적저작물 작성자와 음반제작자는 ‘※△※△※△※△※△’이 됨. 해당 권리의 침해 여부 판단에 있어서 저작권법 제35조의5 공정이용 해당 여부에 대한 검토가 따라야 함. 다만, 2차적저작물 여부에 대한 판단에 있어 유의해야 할 점이 있음. 검토보고서 13쪽의 6번 각주의 서울고등법원 판례는 편곡하여 제작된 노래 반주곡을 2차적저작물로 인정하였으나, 편곡이 이루어졌다고 하여 항상 2차적저작물이 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부적절함. 사안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엄밀하게 따져보아야 할 필요성이 있음. 본 안건의 반주곡 음원은 2차적저작물로 보아도 무방할 것임.
- 강나래 전문위원: 조사한 바에 따르면, 해당 반주기기는 방송사의 음악 프로그램에서도 다수 사용되고 있으며, ‘※△※△※△※△※△’의 권리 자체에는 문제가 없어 보임. 해당 반주기기는 실연자들이 색소폰 공연용으로 많이 사용하는 제품으로 조사되었음.
- B 위원: 방송사에서 사용하는 음반의 경우에는 방송사와 한국음악저작권협회 간 음악저작권에 대하여 포괄적인 이용허락이 이루어져 있어 문제가 될 것이 없어 보임. 본 안건의 경우 해당 사이트의 운영자인 게시자가 스트리밍 송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는 ‘방송’에 해당함. 개인 방송이라는 점에서 권리 침해가 있을 가능성도 있

지만, 동시에 저작재산권 또는 저작인접권 제한 사유에 해당될 가능성도 농후해 보임.

- C 위원: 게시자가 실연 중인 원저작물의 멜로디, 즉 악곡 부분에 대한 저작권 침해 여부 역시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음.
- B 위원: 사안의 경우 실연 중인 악곡 부분에 대하여서도 저작권법 제35조의5 공정이용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C 위원: 최근 유튜버 본인이 악기를 연주하는 모습을 녹화하여 유튜브에 업로드하여 많은 수익을 얻고 있음. 이러한 경우 유튜브는 원곡의 저작권자에게 일정 부분 수익을 배분하고 있지만, 본 안건은 수익 배분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을 것으로 추정됨.
- B 위원: 우리 심의위원회는 해당 유형과 같은 사안이 시정권고 본래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지에 대해서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음. 저작권법 제133조3 "시정권고" 제도는 최신저작물의 무분별한 확산을 조기 차단에 목적이 있는데, 본 안건의 경우에는 피해 확산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 시정권고 대상에 해당하는지 의문임.
- A 위원: B 위원님 말씀처럼 본 안건은 권리 침해가 이루어졌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시정권고의 대상으로 삼기에는 부적절하다고 보여 부결 의견임.
- B 위원: 본 안건은 원저작물의 저작권 및 반주곡 음원에 대한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색소폰 실연 영상과 구독자와의

대화 영상이 더해져 있고, 합법 시장에서 음악저작권 및 반주곡 음원에 대한 권리의 가치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점에서 저작권 제한 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을 부정할 수 없으므로 부결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 C 위원: 스트리밍 송신서비스 중인 사이트에서 노래 반주곡을 이용하고 있는 사안으로, 권리자의 이용허락이 없었다 하여도 공정이용에 해당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시정권고의 대상으로 삼기에 부적절하여 부결함이 타당함.

- 최승수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1번은 부결함.

- 강나래 전문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2번~14번은 실명의 민원인이 신고한 건임. 웹하드 사이트에서 다수의 만화 불법복제물을 30 포인트 내지 50 포인트에 판매 중인 사안임. 총 14개 게시물임.

(순번 3번 채증 자료를 제시하면서)해당 저작물의 42-1화~42-2화를 30 포인트에 판매하고 있으며, 네이버 시리즈에서 한 화당 300원에 대여, 500원에 구매 가능함. 게시물 이미지 내에 "※△ ※△ ※△※△※△ ※△※△※△※△ ※△"라는 워터마크가 포함되어 있어, 불법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하여 재업로드한 것으로 보임.

(순번 13번 채증 자료를 제시하면서)해당 저작물의 1화~13화를 30 포인트에 판매하고 있으며, 네이버 시리즈에서 한 화당 200원에 대여, 500원에 구매 가능함. 순번 3번과 유사하게, 게시물 이미지 내에 "※△ ※△ △※△※△※△ ※△※△※△※△※△"라는 워터마크가 포함되어 있어, 불법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하여 재업로드한 것으로 보여짐.

(해당 안전표를 제시하면서)불법복제물명, OSP명 등은 해당 안전표에 정리해 두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
- A, B, C 위원: 시정권고 요건이 충족되었으므로 가결하는 것이 타당함.
- 최승수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2번~14번은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을 가결함.
- 강나래 전문위원: (불법복제물 제공화면, 파일 다운로드 화면, 불법복제물 재생화면을 제시하면서)순번 15번~447번은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건임. 총 게시물 수는 1,212개임. 심의대상 게시물 모두 불법 복제한 영화, 방송, 음악, 만화 등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임. (심의안전 목록을 제시하면서)일부 안전을 별도로 설명하겠음. 나머지 안전들은 위원님들께서 각자 PC로 접속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람. (음악 '마.피.아. In the morning'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118번은 웹하드 사이트에서 음악 '마.피.아. In the morning'을 50 포인트에 판매한 사안임. 심의대상 게시물에서 제공하고 있는 음원 100곡 중 1곡이며, 2021. 4. 30.에 발매한 댄스 음악임. 2021. 5. 25. 기준 멜론 사이트 음원 차트 순위 15위이며, 멜론, 네이버 바이브 (VIBE) 등 음원 스트리밍 사이트에서 멤버십 유료 가입 후 무제한으로 듣기 가능함.

(영화 '내가 죽기를 바라는 자들'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 순번 301번은 웹하드 사이트에서 영화 '내가 죽기를 바라는 자들'을 180 쿠키에 판매한 사안임. 전체 분량인 약 1시간 39분을 mkv 파일로 제공하고 있음. 2021. 5. 5.에 개봉한 최신 영화이며, 현재 일부 극장 상영 중임.

(방송 '페이트: 윈스의 전설'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 순번 421번은 모바일 웹하드에서 방송 '페이트: 윈스의 전설'을 무료로 제공한 사안임. 2021. 1. 22.에 공개된 1화~6화를 스트리밍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넷플릭스 유료회원 가입 후 시청 가능함.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 순번 448번은 보호원의 시스템 오류로 인해 순번 447번과 중복으로 심의 요청된 것으로 부결 의견으로 검토하였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
- C, A, B 위원: 순번 448번은 부결하고, 순번 15번~447번은 모두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단순 불법복제물이 공중의 이용에 제공된 사안으로 특별한 쟁점 없이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됨.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 최승수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448번은 부결하고, 순번 15번~447번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고, 나머지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 중

단과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는 것으로 의결함.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1-56499호(순번 1번), 제2021-56946호(순번 448번)는 부결하고, 안전번호 제2021-56500호~제2021-56945호(순번 2번~447번)는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그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가결함.

3. 폐회 선언

- 최승수 분과위원장이 제125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폐회를 선언함.

2021년 제125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이
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1. 6. 2.

분과위원장 최승수

위원 노정동

위원 박성호